

2014년도 이사회 의사록

회차	개최일시	참석이사	의안내용	가결여부	비고
40	2014.05.28	홍재수 최남순 이홍희 구본덕 김용직 (5명)	<p>1] 문경관광진흥공단 규정 중 일부규정 개정(안) 건 개정이유: 근무 및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포상휴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 “문경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.”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와 상충되는 별도의 조문이 존재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운영되는 특별유급휴가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 함.</p>	원안가결	